

# 보도자료

# 计从 医蜂桃 对故则于 吉州 圣松 子四 外计

보도 일시	2022. 12. 8.(목) 조간	배포 일시	2022. 12. 7.(수) 09:00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 하주식(02-2100-2630)
	금융소비자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박성빈 (02-2100-2524)
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 최광식(02-3145-5700)
	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	담당자	팀 장 정재승(02-3145-5697)

#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.

- 금소법 시행령 등 개정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 -

#### [ 주요 내용 ]

- ◆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\*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,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\*\*의 권유는 금지됩니다.
  - \* 소비자의 적극적 요청 없이 방문·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
  - \*\* 고난도 상품(증권·공모펀드·일임·신탁 등), 사모펀드, 장내·장외파생 등
- ◆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**자율규제(모범규준)를 업권별로 시행**하여 **방문판매 기준·절차** 등을 정하고 업권별로 **적극 이행**할 계획입니다.

### 1 추진 배경

- □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('22.12.8일)으로 **금융상품**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**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**되었습니다.
  - 이에 따라 그간 방문판매법 규제로 인해 위축되어 있었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,
  - 한편으로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 으로 **금융소비자 피해 발생** 등 **우려**가 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**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**를 **유도**하는 한편 **소비자 보호를 강화**하기 위하여 업계와 함께 **제도 정비**를 추진하였습니다.

## 2 주요 내용

#### 를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: 금소법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

- □ (현행)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(일명 "불초청권유 금지")
  - **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**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.
- □ (개선)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**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**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 (금소법 시행령안 제16조제1항제1호, 감독규정안 제15조제1항 개정)
  - 금융소비자의 **구체적·적극적인 요청이 없는** 경우 **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**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,
  - 이 경우에도 **일반금융소비자**에 대해서는 **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\***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
    - \* (현행) 장외파생상품만 금지 → (개정) 고난도 상품, 사모펀드, 장내·장외파생상품 금지 단,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 (현재와 동일)

#### <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>

						불초청				
		초청	불초청		초청	동의 〇		동의 ×		
						전문	일반		<mark>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/mark>	
	펀드	三外	0	0	$\vdash$	0	0	O (고난		×
증권	펀드	공모	0	0	<b>└</b> /	0	0	0	×	×
	그-	사모	0	0		0	0	×		×
파생 상품	장내	파생	0	0		0	0	×		×
상품	장외파생		0	×		0	×		×	×

#### ② 업권별 금융상품「방문판매 모범규준」시행

- □ (현행) 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현재 **방문판매**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.
- □ (개선) 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**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**을 정하는 「**방문판매 모범규준**」을 수립·시행합니다.
  -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**방문판매원 명부관리**, 소비자 요청시 **신원확인** 및 방문판매시 **사전안내 의무** 등을 **준수**하여야 합니다.
  - 또한 **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** 외에도 **개별 관계 법령**에 따른 **의무\***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.
    - \* (예)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전 동의 필요(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)

### 3 향후 추진계획

- □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,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 판매법이 시행되는 12.8일부터 시행됩니다.
- □ 금융상품 방문판매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 ('21.11.16일,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)되어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,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하주식	(02-2100-2630)
<총괄>	금융소비자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박성빈	(02-2100-2524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최광식	(02-3145-5700)
	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	담당자	팀 장	정재승	(02-3145-5697)
	이 해 서 하나님	책임자	본부장	지순구	(02-3705-5070)
	은행연합회	담당자	부 장	박진향	(02-3705-5040)
	그 이트 다 처 뒤	책임자	상 무	이봉헌	(02-2003-9014)
	금융투자협회	담당자	부 장	김동오	(02-2003-9420)
	새머ㅂ청청성	책임자	본부장	최종윤	(02-2262-6614)
	생명보험협회	담당자	부 장	김윤창	(02-2262-6643)

	손해보험협회	책임자	본부장	신종혁	(02-3702-8550)
	근애포임법외 	담당자	부 장	최정수	(02-3702-8670)
	여신금융협회	책임자	상 무	배종균	(02-2011-0602)
		담당자	부 장	김태훈	(02-2011-0784)
	상호저축은행중앙회	책임자	본부장	이경연	(02-397-8617)
		담당자	부 장	양희경	(02-397-8680)
	대부업협회 신협중앙회	책임자	전 무	이재선	(02-6710-0802)
		담당자	부 장	심용식	(02-6710-0810)
		책임자	관리이사	우욱현	(042-720-1005)
		역감사	부문장	김상범	(02-590-5790)
		담당자	본부장	민경대	(042-720-1341)
			본부장	강범수	(02-590-5810)



